



세법에 의거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재정세무국의 주요 기능은 지방세 관리 및 뉴욕주 정부의 조세행정 및 징수에 대한 각 단계별 과정에 연관된 납세자들의 권리 및 책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납세자들의 올바른 인식은 주 및 지방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는 세법 제41조로 Taxpayers' Bill of Rights(납세자 권리장전)를 제정했습니다.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감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국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안내서
- 납세자가 세무국의 부정적 감사 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고 환급금을 신청하고 항의서를 제출하는 절차
- 조세채무를 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무국의 절차

납세자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본 간행물은 조세행정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뉴욕주 감사

뉴욕주 세무국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액수의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뉴욕주 세법에 의거하여, 납세자는 세금보고에 보고된 내용 입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대상 세금유형에 따라 이러한 작업에는 납세자의 소득, 영수증, 지출내역, 신용 및 기타 사업관련 자료의 심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감사표준(Professional audit standards)

감사는 전문적인 감사표준에 의거하여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와 감사기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감사인에 의해 실시됩니다.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납세자, 납세자 가족 또는 납세자의 직원(비즈니스 감사의 경우)과 어떠한 사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감사 대상업체에 개인적인 이해 또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납세자는 공정하고 정중하며 업무상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언제라도 감사표준이나 납세자로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제공된 전화번호로 해당 감사인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부정행위 혐의를 보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세무국의 내사과(Office of Internal Affairs)에 (518) 451-1566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서신을 보내 주십시오.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INTERNAL AFFAIR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

감사시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감사인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본인의 권리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부당한 요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감사시 본인의 사업 및 개인생활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며 독단적인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소 시효

뉴욕주 세법은 세무국의 추가적인 과세 권리에 대해 보통 3년의 공소 시효를 정해 놓았으며 본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보고된 금액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6년의 공소 시효는 세금회피를 남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소 시효를 연장하려면 공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연장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 시효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IRS가 제시한 세금변경 사항(연방세금 변경사항)을 연방 세금보고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탈세를 위해 사기성 허위 세금보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상속세 및 법인세 목적상, 납세자는 변경, 수정, 재조정, 불허사항에 대한 최종 확정 날짜로부터 해당 연방세금 변경사항을 90일 안에 뉴욕주에 보고하고 이 변동사항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 보호

납세자는 왜 세무국이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법은 승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세금보고에 보고된 정보나 감사시 입수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비밀보장 및 상호성 기준 하에 세무국이 납세자의 정보를 IRS 및 기타 정부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세무감사 대변

세무감사시 납세자는 본인을 직접 대변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사람을 동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변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서면 승인된 (위임장: POA)을 가지고 있어야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 중 언제라도 대변인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대변인을 구하기 위해 언제라도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을 구하기 위한 인터뷰 중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기간 동안만 허용됩니다.

재정세무국의 이전 직원은 세무국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의 2년동안 세무국과의 세금문제 해결에 있어 납세자를 대변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이전 직원은 언급된 2년의 기간 동안에도 독립적 세금항소기관에 대해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적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전 직원은 고용기간 동안 직접 관련되었던 사안에 관해서는 영구적으로 납세자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 녹음

대면 인터뷰 시 세무국에 미리 통지를 한 경우에는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비용과 본인이 준비한 기기로 녹음을 해야 합니다. 세무국 또한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대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녹음 복사본이나 인터뷰 전문을 제공합니다. 단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감사

현장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작하기 전 적어도 15일의 시간을 줍니다. 현장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통 감사인은 해당 납세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첫 감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 후 납세자는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준비해 놓아야 하는 장부 및 기록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비즈니스 감사일 경우 납세자의 업무 공백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보통 감사장소를 납세자의 사업장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15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30일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첫 감사회의

첫 감사미팅(첫 감사회의)에서 감사인은 납세자에게 감사 방식 및 절차, 감사수준을 설명하고 감사 조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권리 및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첫 미팅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법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 감사기법에는 '평가기간 방식'이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샘플링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종류의 세금에 대한 감사처럼 감사범위가 좀 더 확장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사용하는 감사방식은 세금유형, 납세자 자료의 정확성 및 유무, 그리고 해당 사업의 크기와 복잡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세금 보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지적사항은 감사 중 언제라도 다른 세금 전문분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한 전문분야의 세금에 대한 감사조정은 다른 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세와 사용세에 대한 세액 산정은, 세무국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납세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해당세금을 산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에만 한하여 예상수치를 사용해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 지속기간

감사는 보통 3년 간의 자료에 대해 실시되며 감사기간은 최소 며칠에서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속기간은 감사대상 세금보고의 복잡성 및 관련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사 완료에는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감사 지적사항

감사인이 권장하는 변경항목이 없을 경우 세무국은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납세자의 협조에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변경항목이 있을 경우 감사인은 납세자를 만나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감사 보고서 및 일정표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 지적사항, 감사기법 및 절차를 쉬운 용어로 설명할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감사 중 발견된 회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문서기록 보관 절차에 적용해야 하는 권장 변경사항
- 오류가 발견된 영역에 대한 올바른 세법 적용 설명
- 추가로 내야할 세금 고지서, 또는
- 환급금에 대한 통지서

세무국은 납세자가 감사 지적사항 중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찾거나, 감사 테스트 기간이 실제 사업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관련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입니다. 감사인은 납세자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분석할 것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보고서를 수정하여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와 함께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지적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에 서명하여 감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으나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납할 수 있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금분납 동의서' 참조). 그러나 미납금에 대해 이자(및 벌금)가 계속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 후 감사인에게 보내십시오. 모든 감사 보고서는 감사 감독관들의 자세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감독관과 추가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 협의 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잔액에 대한 *Notice of Deficiency*(세금추징서)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통지서)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는 분쟁조정 서비스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또는 독립적 세금항소국(Division of Tax Appeals)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항소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원할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로 항소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세무국에 서면통지를 보낸 적이 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항소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세무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벌금과 이자의 누적을 막기 위해 세금잔액을 일단 지불하고 해당 금액에 할당된 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국이 항소내용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거절할 경우, 납세자는 분쟁조정 서비스국 또는 세금항소국을 통해 해당 법적 청구기간 내에 정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란 세금보고, 환급신청 및 납세자가 제출한 기타 문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또한 서류감사에는 세무국이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납세자가 제출했어야 하는 세금보고도 포함됩니다. 때때로 다른 출처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감사를 진행하거나 이러한 입수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세무재정국 내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감사인 간의 직접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대부분의 경우 서류감사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는 세무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추가 세금이 징수되거나 환급금이 있을 때입니다.

세무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는 서류감사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답변 기간이 주어집니다. 세무국에서 변동항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통지와 협조에 감사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서류감사 지적사항

내야할 추가세금이 생겼을 경우 납세자는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를 받거나 추가세금이 징수되는 이유가 설명된 유사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답변 기간이 주어집니다. 감사인은 납세자의 답변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기존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 또는 유사한 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환급금이 생길 경우 납세자는 이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환급금을 받습니다. 이 때 납세자가 세무국에 기타 세금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쇄 항목 참조').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감사 지적사항에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세무국으로부터 받은 **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감사 변경사항 제안내역)나 유사한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으나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납할 수 있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금에 대해 이자(및 벌금)가 계속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국에 이에 대한 진술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해당 감사인이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게 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문서를 새로 수정하여 납세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 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잔액에 대한 **Notice of Deficiency**(세금추징서)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통지서)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는 분쟁조정 서비스국 또는 독립적 세금항소국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항소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사 조정통지서에 동의하지 않아 세무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더라도 다시 항소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보통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벌금과 이자의 누적을 막기 위해 세금잔액을 일단 지불하고 해당 금액에 할당된 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국이 항소내용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거절할 경우, 납세자는 분쟁조정 서비스국 또는 세금항소국에 해당 법적 청구기간 내에 정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 항소권

납세자는 **Notice of Deficiency**(세금추징서) 또는 유산세 환급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 서비스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에 제출하거나(다음 페이지 참조), 대리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특별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신청서)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Conciliation Order**(조정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Notice of Petition**(청원통지서) 및 **Verified Petition**(확정청원서)을 해당 관할지역 대리법원에 제출하여 법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확히 어떤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받은 **Notice of Deficiency**(세금추징서), **Notice of Disallowance**(불허통지서) 또는 **Conciliation Order**(조정명령)에 표시되어 있는 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 양식을 얻으려면 관할지역 대리법원의 서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청원서 양식 및 해당 법률에 대한 신청 자체는 청원서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원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 세무재정 감독관(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에게도 청원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
OFFICE OF COUNSEL
BANKRUPTCY, ESTATES, AND COLLECTION UNIT
BLDG 9, ROOM 100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

환급금 청구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은 납세자가 원천세나 예납세를 초과지불했을 경우 발생하며 보통 매해 세금보고시 환급금에 대해 청구합니다. 세무국은 세금보고에 대한 초기 처리과정에서 이러한 환급금을 준비합니다.

환급금은 여러 형태의 세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제출한 후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또는 세금면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환급금 청구시 세금보고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기타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세금납부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과세, 징수 또는 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초과지불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무국은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날짜로부터 120일 안에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120일 안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해당 환급이나 세액공제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공소시효로 인해 해당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세무국은 납세자의 세금초과납부를 통지하거나 환급금을 지불하거나 세액공제를 허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국은 해당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국이 해당 세금보고 마감일이나 실제 보고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45일 안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에 이자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요청한 환급금에 대해 승인하거나 조정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승인될 경우, 납세자는 세금초과지불액에 대한 환급금과 해당하는 경우 이자금도 함께 받게 됩니다.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요청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환급금과 조정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금액 전체 또는 일부가 불허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제기 권리가 설명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 납세자가 세무국이나 기타 주기관, IRS, 뉴욕시 또는 기타 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환급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세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환급 상쇄에 대해 통지받게 됩니다. 세무국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IRS, 뉴욕시 또는 해당 주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상쇄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납세자가 환급금에 대한 조정 또는 불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Notice of Disallowance**(불허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법적 청구기간 내에 분쟁조정 서비스국에 조정회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세금항소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of Disallowance**(불허 통지서)를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결과가 순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회의를 요청하거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세무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불허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내에 조정회의를 요청하거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Notice of Disallowance**(불허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서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의 경우 조정회의나 공청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무국에서 판매세금 환급신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신청이 불허된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재신청 또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또는 청원서를 제출한 후 하단에 있는 **세무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 항목에 설명된 옵션사항과 동일한 옵션을 갖게 됩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공소 시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의 경우, 납세자는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이나 제출일로부터 3년내,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내, 이 두 경우 중 더 나중 날짜 이내로 수정된 세금보고를 제출하거나 기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간의 공소시효 안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판매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정된 세금보고를 제출한 경우, 환급금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역행하여 3년 기간에 세금보고 연장 기간을 합한 총 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간의 공소시효 안에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정된 세금보고를 제출한 경우, 환급금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역행하여 2년 동안 납부한 총 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환급이 **반드시** 뉴욕주에 보고되어야 하는 연방 변동사항이나 수정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공소시효 기간을 지나서도 소득세, 유산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수정 세금신고를 제출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통지받은 변동사항이나 수정사항 적용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수정 세금신고를 제출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환급 신청양식, 보고양식 또는 기타 방법은 환급신청 대상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환급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거나 해당 양식을 원할 경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벌금 및 이자

벌금이 부과되는 가장 일반적인 세가지 이유는 (1)늦은 신고, (2)세금 미납금, (3)추정세 과소납부입니다. 간단히 말해, 벌금이나 이자를 피하는 방법은 정해진 날짜에 세금신고를 하고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본 간행물에 설명된 항목들을 확인하여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 및 세금체납에 대한 벌금액은 미납된 세금액수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부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늦은 신고에 대해 여러 종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벌금은 해당금액이 납부될 때까지 계속 추가됩니다. 모든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해당 이자율을 확인하려면 세무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세무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

아래와 같은 세무국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세금추징 또는 세금결정 고지서 발행
- 환급 요청에 대한 거절, 또는
- 라이선스, 등록증 또는 면제증서에 대한 불허 또는 취소

납세자는 양식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 서비스국에 제출하거나, 또는 세금청문회 양식 TA-10, *Petition*(청원서)을 세금항소국에 접수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된 세금액수가 납세자의 예산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항소국 공청회를 소액재판소(Small Claims Unit)에서 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5페이지의 *소액재판 옵션* 참조). 유산세의 경우, 양식 CMS-1을 분쟁조정 서비스국에 제출하거나, *Notice of Petition*(청원통지서) 및 *Verified Petition*(확정청원서)를 해당 유산의 관할구역의 대리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본을 세무재정 감독관(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에 제출하십시오(*유산세 항소권* 참조).

유산세에 관해 세무국이 취한 결정에 대해서는 세금항소국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납부할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정식 예납금 공청회 권리가 없습니다.

- 세금보고 상에서의 산술적 또는 사무적 실수
- 연방세금보고에 대한 IRS의 변동항목, 또는
- 세금보고 상의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납부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국의 입장을 설명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명시된 기한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나 청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기한은 세법에 근거하며 연장될 수 없습니다.

배달증명(certified) 또는 **등기(registered)**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기한 법에 따라, 제출 일자란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가 들어있는 봉투에 미국 우체국 서비스의 소인이 찍힌 날이거나 또는 지정된 사설배달서비스에 의해 IRC 제7502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은 인증을 받은 일자를 의미합니다. 간행물 55,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지정 사설배달서비스)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사설배달서비스 업체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는 해당사안의 심사를 위해 직접 출석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대변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승인받은 대변인은 납세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납세자를 대신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조정회의

조정회의는 공식적인 공청회 없이 적정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회의는 공정한

결론도출을 위해 모든 입증자료를 심사하게 되는 회의 진행관에 의해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진행관은 동의서 형식의 제안서를 납세자에게 보냅니다. 납세자가 수락의 표현으로 제안 동의서에 서명하여 15일 안에 다시 보내게 되면, 이의제기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15일 안에 동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조정회의는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진행관은 30일 내로 조정명령을 발행합니다. 조정명령이 발행된 지 90일 이내에 세금항소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또는 유산세의 경우, 관할구역의 대리법원에 *청원서나 확정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제외) 본 명령은 법적구속력을 갖습니다.

채권이나 기타 증권의 증가폭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유통업체, 수입수송업체, 터미널 운행업체 또는 석유산업체에는 이와 같은 조정회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항소국에서만 이와 같은 경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회의 신청은 분쟁조정 서비스국에 양식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조정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또한 다음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NYS TAX DEPARTMENT
BUREAU OF CONCILIATION & MEDIATION SERVICE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

세금 청문회

세금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세금항소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공정한 행정법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대립당사자 절차입니다. 이 청문회는 속기로 기록됩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행정법 판사는 납세자나 세무국이 최종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Tax Appeals Tribunal)의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논쟁현안에 대한 최종판결을 행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심사가 요청되는 경우, 심판원은 청문회 자료 및 기타 구술 또는 서면 자료를 심사하여 판사의 판결을 확인, 번복 또는 수정하여 결론을 발표하거나 추가 청문회를 위해 해당 사안을 행정법 판사에게 다시 넘기게 됩니다.

법원 심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를 요청하는 데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이 배달우편증명 서비스 또는 사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 특정세금관련 문제일 경우 법원심사 신청 접수시 법원비용과 더불어 해당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내거나 이러한 액수에 대한 보증금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옵션

논쟁 중인 세금액수가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ax Appeals Tribunal*(조세심판원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한액수를 넘지 않을 경우(이와 관련한 내용은 청원서 양식과 함께 받게 됨), 세금항소국의 소액재판부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청문회는 공정한 진행관이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세금항소국의 기타 부서, 조세심판원 또는 미국 내의 다른 법원의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세금청문회는 양식 TA-10, *Petition(청원서)*를 접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양식과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ax Appeals Tribunal(조세심판원의 시행규칙)*은 세금항소국 및 조세심판원의 웹사이트 www.dta.ny.gov에서 얻으시거나 (518) 266-3000로 전화, 또는 다음 주소에 서신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IVISION OF TAX APPEALS
AGENCY BUILDING 1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3**

청원서 양식과 관련법에 대한 요청은 기간제한 법에 근거하여 청문회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원서 제출기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선량 배우자 구제규정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납세자와 납세자의 배우자는 세금보고에 명시된 세금 및 기타 이자와 벌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했거나 허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요구하여 총세금이 과소신고되었을 경우
-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또는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89, *Innocent Spouse Relief(선량배우자 구제)* 및 양식 IT-285,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선량배우자 구제 요청서)* 및 해당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세금징수 과정

납세자의 항소권리가 만료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징수 및 민사집행부서(Civil Enforcement Division)로 징수과정이 넘어갑니다. 징수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분납 동의서(Installment payment agre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 **Offer in compromise(세액조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국이 이 제안서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안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지급불능상태여야 하며 세무국이 해당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세액조정 제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220, *세액조정 제안 프로그램(Offer in Compromise Program)*을 참조하십시오.

세금분납 동의

납세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총 세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분납 동의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분납 동의 신청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납세자는 거래은행과의 직접 지불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분납금이 매달 자동으로 채되어 세무국 거래은행으로 송금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 동의하에 납세자는 총 세금액을 매달 적정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납세자가 내야하는 총 세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총 세금액이 납부될 때까지 미납금에 대해 이자 및 벌금은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세금분납 동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현 재정상태 및 총 세액채무 지급능력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정해진 날짜에 하고 모든 차후 세금을 마감일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 부과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는 세금분납 동의 하의 지급불능 상태가 됩니다.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세금분납 동의 하의 세금에 대한 징수과정을 바로 시작하거나 동의서를 수정하거나 파기할 것입니다.

납세자와의 분납 동의 체결여부에 상관없이, 세무국은 해당 카운티 감독관 및 주 서기관에 과세영장을 제출하여 납세자의 채권자들에 대해 세무국이 우선순위가 있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세금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국은 사전통지 없이 언제라도 세금분납 동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사전 통지 후에 세금분납 동의내용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세금분납 동의 체결 이전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납세자의 재정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세금분납금이나 기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납세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요청받은 최신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거나, 세금분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무국이 세액조정제안을 재검토, 철회 또는 거절하는 경우, 세무국은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동원하여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장

과세영장은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판결과 같은 의미로써 부동산권 및 동산권에 대해 재산선취권(lien)을 발생시킵니다. 과세영장은 카운티 감독관 및 주 서기관 사무실에 보관되는 공공 기록입니다. 뉴욕주에 밀린 세금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면 납세자의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얻는 과정과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과세영장은 밀린 세금이다 납부되거나 영장이 만료될 때까지 카운티 감독관 및 주 서기관 사무실에 계속 보관됩니다.

서류철에 보관된 과세영장은 주 정부를 납세자의 동산권 및 부동산권에 대한 선 취득권자로 지정하며 세무국이 특정 징수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압류

압류란 납세자 소유재산에 대한 압수를 의미합니다. 압류 과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전,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대상은 은행 계좌이며 해당 계좌의 돈을 이체하여 세무국으로 전송하도록 은행에 요청합니다. 대출금이나 월세금과 같이 제3자가 납세자에게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금전등록기의 현금도 압류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 및 판매 관련비용이 예상 매각수익보다 큰 경우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소득징수

소득징수는 압류의 한 형태로서 납세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집행됩니다. 세무국은 납세자가 받은 총 급여의 최대 10%까지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국은 해당 고용주에 직접 요청하여 납세자의 급여에서 최대 10%까지의 금액을 자동적으로 공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득징수는 밀린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는 시점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 및 매각

세법상 면세되지 않는 납세자의 실물 개인 자산은 압수되어 세금경매에서 매각됩니다. 적어도 판매수익이 예상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세무국의 압수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압수 과정에서 징수요원은 납세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장 자물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징수요원은 사업자의 모든 물품을 압수하여 판매일까지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압수 후에 납세자는 해당 매각일자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매각 시작 전, 납세자가 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매각 준비비용을 세금, 벌금 및 이자금과 함께 전액 납부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납세자에게 재양도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압류된 자산을 요청일로부터 60일 또는 그 이상의 명시된 기간 안에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압류자산을 좀 더 오랜기간 보유하는 것이 주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국은 납세자의 요청을 존중할 것입니다. 압류자산을 오랜기간 보유하게 될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납세자의 자산은 자산의 상태, 판매유형 및 예상경비를 모두 고려하여 뉴욕주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에서 시장가로 매각될 것입니다.

해당 자산이 공개 경매에서 팔리면 납세자는 해당 판매수익의 처리내역을 받게 됩니다. 판매수익이 납세자의 밀린 납세금 및 세무국의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남게되면 해당 잉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상쇄

납세자가 주 기관이나 대행기관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받을 대금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자가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자동적으로 세무국으로 전송되어 현 세금잔액에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받을 지급액이 이러한 상쇄 대상이 되는 경우 세무국은 미리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경우 납세자가 받을 뉴욕주 세금 환급액이 기타 세금잔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주기관, IRS, 뉴욕시 또는 타주에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기관으로 환급액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기관, IRS, 뉴욕시 또는 타주 기관은 이를 납세자에게 우선 통보한 후 해당 환급액을 세금 체납액에 적용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뉴욕주, 뉴욕시 또는 뉴욕 근로소득세에 대해 밀린 체납금이 있는 경우, 이는 미재무부 상쇄 프로그램(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set Program)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납세자의 연방 근로소득세 환급금은 밀린 세금액까지 뉴욕주 체납액에 적용될 것입니다.

채무변상 의무가 없는 배우자에 대한 환급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 환급금은 납세자 배우자의 세금미납금 또는 뉴욕주 기관에 대한 기타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양식 IT-280 *Nonobligated Spouse Allocation*(채무변상 의무가 없는 배우자 배분)을 작성한 후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출하십시오.

- 위 양식을 소득세 신고에 함께 포함합니다. 또는
- 환급금이 기타 채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세무국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위 양식을 제출합니다.

양식 IT-280 제출이 납세자 배우자의 IRS 채무금이나 기타 주기관에 미납한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자 자산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고 해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납세자가 해당 채무금을 다 갚거나 시간경과로 법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압류 해제가 해당 채무에 대한 징수를 촉진하는 경우
- 압류 해제가 조건으로 포함된 세금분납 동의를 체결하는 경우
- 압류자산의 시장가격이 납세자의 세금미납금을 초과하고, 부분적인 해당자산에 대한 해제가 미납금 징수에 방해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또는
- 납세자의 현 재정상황이 어려워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세무국이 판단할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을 압류한 경우 위의 사안에 근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납세자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해도 나중에 다시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에 대해 잘못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국은 압류한 해당 자산, 자산의 시장가와 동일한 금액 또는 압류한 금액전체를 이자와 함께 반환할 것입니다.

담당책임자 평가

판매세 및 사용세, 원천과세, 자동차연료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담당책임자*가 회사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인회사나 폐업한 회사의 중역, 이사 또는 직원일 경우, 파트너십이나 자영업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세법 조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는 경우 담당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일처리를 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회사의 세금보고에 서명을 하는지, 회계기록을 관리하는지 또는 사업경영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면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회사를 대신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책임자 평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파트너십의 멤버일 경우 실제 파트너십을 대변해 일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판매세 및 사용세, 그리고 자동차연료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에 대해서 담당책임자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담당책임자 평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서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회의를 요청하거나 세금항소국 청문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세무국의 평가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청문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평가 통지서에는 평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될 것입니다. 판매세와 사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업체가 조정 회의의 요청하거나 동일한 세금 미납금에 대해 세금항소 청문회를 요청했을 경우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제때 항소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또 평가내용에 대해 항소하고 싶은 경우 납세자 본인이 조정회의를 신청하거나 세금항소 청문회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담당책임자 평가가 최종적일 때 세무국은 가능한한 모든 징수법을 동원하여 담당책임자의 자산에 대해 징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기타 관련업체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라해도 사업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당책임자의 세금부채액은 사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유산관리인 및 양수인의 유산세 납세의무

유산 관리인이 해당 자산을 유산 수혜자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또는 뉴욕 유산세를 내기 전 유산의 기타 세금 미납금을 지불했다면, 납부해야 할 유산세 잔액에 대해 납세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유산세가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 또는 정부기관이 유산세 선취특권 해제를 승인할 때까지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수혜자 자격으로 유산의 일부 자산을 받았을 경우 받은 자산의 가치액수까지 유산세 미납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유일한 세입자로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정

납세자가 판매세/사용세 또는 원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비즈니스 납세자인 경우 손님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입금하고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신탁계정을 개설하도록 세무국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정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할 날짜에 해당 세금납부액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납세자의 빈번한 세금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세무국은 신탁계정을 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사업자 등록증) 취소 또는 정지

고의적으로 세금신고 또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세법의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판매세와 사용세를 징수하기 위한 *Certificate of Authority*(사업자 등록증)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요구되는 뉴욕주 내에서의 사업경영은 금지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도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해당 등록증 없이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사업자 등록증)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에 대한 통지와 더불어 각 단계별 납세자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충족한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취소 및 정지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징수 기간의 납세자 대변인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임하여 본인을 대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대변인이 납세자 부채시 세무국에 연락을 취할 경우 대변인은 양식 *POA-1, Power of Attorney*(위임장)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라이선스 및 담보

특정 사업(예: 터미널 운영)에 대한 납세자의 종사권리는 세금미납시 해당 라이선스의 취소 및 정지로 인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행을 위해 제공한 채권이나 기타 담보물은 납세자의 세금체납금 해결을 위해 현금화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취소된 경우 새 채권을 제공해야 채권이 요구되는 사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또는 불편신고

세무국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518) 457-5181.

전화상담원들이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 문제 해결을 돕거나 차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www.tax.ny.gov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원하는 정보를 얻고 온라인으로 본인의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지원 서비스

Business Tax Information Center
(비즈니스 세금 정보 센터): (518) 457-5342
Personal Income Tax Information Center
(개인 소득세 정보 센터): (518) 457-5181
Estate Tax Information Center(유산세 정보 센터): (518) 457-5387

세금 양식 및 간행물 주문: (518) 457-5431

텍스트 전화(TTY) 직통번호

(TTY를 사용하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용): (518) 485-5082

장애가 있는 경우: 저희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미국장애인법)를 준수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로비, 사무실,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센터로 전화하십시오.